

『 2026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제 1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노인 복지법,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내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1)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 욕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의 간에 분쟁을 미연의 방지
-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을 받은 자의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 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류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 가 필요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 한다.

3. 준수사항

- 1) 이용계약서는 표준장기이용계약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기본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 배상등을 포함한다.

제 2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첨부 1 』 2026년 노인 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수가 (월 한도액) (단위: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 수급자		0% 부담	
		의료급여, 차상위 계층		6%.9% 부담	
		일반 수급자		15%~ 20%부담	

■ 요양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고시)에 따름

【 첨부 2 】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 (원)	구분	금액(원)
30분이상	17.450	150분이상	50.640
60분이상	25.320	180분이상	57.020
90분이상	34.120	210분이상	63.530
120분이상	43.430	240분이상	70.080

제 3조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본기관 사무실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1) 신원인수의 권리

- ① 수급자의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급여계획을 내릴 권리
- ② 수급자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조를 제공받을 권리
- ③ 수급자의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④ 수급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신원인수의 의무

- ① 이용자의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부담의무
- ③ 인적 사항등 변경 및 노인장기요양법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원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제 4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2) 수급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3) 표준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재공의무

2. 수급자의 의무

- 1) 월 이용료의 납부 의무
- 2)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 3) 보호자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3. 수급자의 권리

-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 2)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3)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 4)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5) 수급자는 직원 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유로히 생활 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 설명 및 동의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 비용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 상담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야한다.
인권 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건강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른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기록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 결정	수급자의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 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소지자 보균자로 판명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4. 기관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판단이 되었을 때
6. 10일 이상을 입원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지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급일수에대해 (보험료 포함)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6조 (본인부담금 감면 절차)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시행 규칙 제35조에 따른다

1. 장기요양 보험법 제 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 3항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감면자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제출할 수 있다.
 - 1)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시행규칙」제 40조에 따른 대상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하에 따른 의료급여 증명서
 -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 급여 시행규칙」 제 12조 제 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 3)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와 제 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장기요양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제시받은 경우에는 본인 여부 및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제 사용 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공단은 본인부담금 감면으로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 또는 공단에 확인에 의하여 이를 해당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